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**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5호

**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서구 청소년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.”를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하고 구역특성에 따라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.”를 “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, 지역특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모 및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”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####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6호

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” 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

제1조 중 “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제3항”을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**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7호

**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함

제1조 중 “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” 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”으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**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8호

**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 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 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식품위생법 제65조”를 “「식품위생법」 제65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”을 “명예식품감시원의 교육, 활동에 대한 지원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⑦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
제8조 중 “제4조제4항제2호” 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11조 제4호 “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” 을 “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**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9호

**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.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.

- 1. 옥외광고·교통·환경·도시계획·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과장
- 2. 국어·옥외광고·교통·환경·도시계획·건축·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
- 3.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, 위원회 관련 담당이 된다.

제33조 제2항 중 "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" 를 "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 지요금 계기로 납부"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·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**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10호

**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·운영조례  
일부개정조례**

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·운영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” 를 “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52 조의 규정에”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” 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2조 중 “주택건설촉진법”을 “ 「주택법」 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”에서 “ 소속공무원이 아닌”을 삭제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훈 령**

인천광역시서구정원의상근인력채용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**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53호

**인천광역시서구정원의상근인력채용등에관한규정  
일부개정규정**

인천광역시서구정원의상근인력채용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정원의상근인력채용등에관한규정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의 상근인력 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3호 중 “채용 및 현원”을 “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사용하는 ”을 “채용 및 사용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인사부서에 채용 의뢰하여야 한다.”를 “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용부서가 사용목적상 상근인력을 긴급히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사부서는 채용요청이 있을시 자격요건에 합당한 자를 선정,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”를 “사용부서는 상근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신원조회를 요구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사부서에 채용해제를 의뢰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서는 해제요건을 검토 후 채용을 해제할 수 있다.”를 “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을 해제하는 때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별지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### 근로계약서

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“근로기준법” 및 “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의 상근인력 채용 등에 관한 규정” 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당사자

가. 사용자

- (1) 기관명 : 인천광역시서구
- (2) 사업자 : 인천광역시서구청장
- (3) 소재지 :

나. 근로자

- (1) 성 명 : (2) 주민등록번호 :
- (3) 주 소 :

2. 근로조건

- 가. 근 로 처 : 인천광역시서구( 실과소)
- 나. 직 종 :
- 다. 임 금 :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정한 금액
- 라. 근로시간 : 인천광역시서구정원외상근인력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함
- 마.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바.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3. 근로계약 기간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사용자 : 인천광역시서구청장 (인)

근로자 : (인)

## 고 시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42호

##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녹지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녹지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07년 9월 28일

#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위 치 : 서구 경서동 678-1번지 일원
2.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, 녹지) 지형도면 조서

#### 가. 교통시설(도로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경과지	최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1	301	10	국지 도로	4	경서동 699	경서동 678-2	일반 도로	경서동		
신설	소로	1	302	10	국지 도로	4	경서동 698	경서동 678-2	일반 도로	경서동		

#### 나. 공간시설(녹지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녹지1	녹지	완충 녹지	경서동 678-2번지 일원	1,925.3			1993.6.12	
변경		녹지	완충 녹지	경서동 678-2번지 일원		감 80	1,845.3		면적감소 및 대체녹지 100㎡확보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: 따로붙임 (계재생략)

## 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825호

##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 공람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·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서(초안)에 대하여 공람공고 합니다.

2007년 9월 28일

#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####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관한계획

##### 가. 교통시설(도로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3	401	4	특수 도로	54	검암동 487-10	검암동 370-11	보행자 전용도로			

2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

4. 관련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5. 기 타 :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며,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